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37
------	-----

2022. 12. 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0월 06일, 박환희 의원(찬성자 25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12.20.)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박환희 의원)

1. 제안이유

가. 현재 서울특별시에에는 종묘(1965), 창덕궁(1997), 조선왕릉(2009)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한양도성에 대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조선왕릉 40기 중 8기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음

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2020.2.)’ 과 같은 법 시행령(2021.2.)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각종 개발로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인류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논의 경향이 ‘등재’에서 ‘등재 이후의 보존·관리’의 문제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2. 주요내용

- 가. ‘세계유산’, ‘세계유산지구’ 등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 나. 세계유산 등재 노력과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안 제4조).
- 다. 세계유산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을 정함(안 제9조).
- 마. 세계유산 등의 멸실·훼손구간 복원 노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바.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운영 및 협의사항(안 제11조).
- 사.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아.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13조).
- 자. 세계유산의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차.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홍보활동에 대한 포상규정(안 제15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세계유산과 잠재목록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서울의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련 동향

- 유네스코는 현존하는 세계유산의 유산영향평가 도입을 촉구하면서 유산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유산 대부분이 건축 및 토지 개발(75%), 교통시설 확충(43.4%) 등 인공적 요인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음을 밝혔다.
- 또한, 논의된 의제 중 완충구역¹⁾은 보존 측면뿐만 아니라 유산 지정 과정에서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보호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지침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함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의 등재만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유산보존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등재 이후의 유산 보존관리 강화 등)로 사전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하였음.

1) 핵심구역의 인접 지역으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 사전평가 제도는 사전평가를 거친 등재 신청서만 심사하는 것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준비절차 기간이 기존 최소 약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로 1년 정도 더 연장되는 등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사전 준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세계유산은 1995년 종묘,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등이 처음 등재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15건이 등록되었으며, 다수의 세계유산이 조선왕릉(40기), 한국의 서원(9개소)과 같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연속유산²⁾이고, 이중 서울 소재 세계유산은 종묘, 창덕궁, 조선왕릉(40기 중 8기) 등임.
- 한편,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된 우리나라의 잠정목록 유산은 총 12건이며, 이 중 서울시 소재 유산은 한양도성 1건임.

2) 연속유산 : 조선왕릉의 경우, 총 40기 중 서울지역 8기, 경기도 일원에 32기가 18개 지역으로 나뉘어 분포되어 있는데 이처럼 지역이나 나라 국경에 걸쳐 세계유산이 흩어져 있는 경우 이를 연속유산이라고 함.

<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현황 >

연번	세계유산	잠정목록
1	종묘(1995년)	가야고분군
2	석굴암·불국사(1995년)	강진 도요지
3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낙안읍성
4	창덕궁(1997년)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5	화성(1997년)	대곡천암각화군
6	경주역사유적지구(2000년)	설악산천연보호구역
7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년)	염전
8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외암마을
9	조선왕릉(2009년)	우포늪
10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년)	중부내륙산성군
11	남한산성(2014년)	한양도성
12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13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년)	/
14	한국의 서원(2019년)	
15	한국의 갯벌(2021년)	

다. 조례제정의 필요성

- 서울시 내 우수한 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 마련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계유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에서 정부(국가)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동 제정안을 통해 보존·관리 및 활용될 세계유산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됨.

- 또한, 잠재목록인 한양도성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향후 동 제정안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조례로 법규화한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현재 부산, 대구, 인천 등 12개 시·도에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임.

<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례 현황 >

연번	지방자치단체	조례명
1	부산광역시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4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5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6	경기도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7	충청북도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
8	충청남도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9	전라북도	전라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	전라남도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11	경상북도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경상남도	경상남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라. 주요 조문별 검토

(1) 목적과 기본이념(안 제1조 ~ 안 제3조)

- 제정안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준

용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하고 그 가치를 손상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인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2) 시장의 책무 등(안 제4조)

- 안 제4조는 서울의 우수한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계유산 관련 정책 수립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은 ‘당사국은 유적관리자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원주민, NGO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자국의 잠정목록을 준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시책의 수립과 추진은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민들이 세계유산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면 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자긍심이 고취되어 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게 되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중 구체적인 권한과 사무의 주체를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수정의견
제4조(책무) ① ~ ③ (생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3) 적용 범위(안 제5조)

- 안 제5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 내 소재한 세계유산(종묘, 창덕궁, 조선왕릉 8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정부(국가) 기관인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 세계유산은 원칙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의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5조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정부와 서울시 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안함.

제정안	수정의견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서 신설>	제5조(적용범위)-----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이하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에 ---- ----- .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세계유산은 제외한다.

(4) 세계유산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 안 제8조)

- 제정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해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계유산 보존·관리와 활용 정책을 일관성 있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등(안 제9조)

- 안 제9조는 시장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학술연구·조사, 시민 인식개선, 문화유산 발굴 등 추진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9조의 약칭은 법률에서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 사용되며 이미 정비되어 있으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제정안	수정의견
제9조(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등) ① (생략) 1. <u>세계유산, 잠정목록 유산(이하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u> 에 대한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조사	제9조(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등) ① (제정안과 같음) 1. <u>세계유산 등</u> ----- ----- -----

(6) 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세계유산별로 ‘서울특별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의회에서 협의 사항으로 ▶시행계획수립·재검토 사항,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세계유산 위원회에 요청할 사항, ▶세계유산 복원·건설사업 시행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이 협의회 구성원은 시의원, 지역주민 대표, 건축·도시계획, 관광, 환경, 문화재 분야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됨.
- 시장이 각계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하는 취지는 이해되나 시장이 각계 전문가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협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에서는 시장의 재량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원에 대한 규정에도 시장의 재량권이 없음.
- 따라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를 준용할 경우, 협의회 구성과 그 구성원에 대해 “세계유산보존·관리·활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

제정안	수정의견
제11조(서울특별시 세계유산보존협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1. ~ 5.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11조(서울특별시 세계유산보존협회의 구성·운영) ① (제정안과 같음) 1. ~ 5. (제정안과 같음) <u>6.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u> ②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	수정의견
1. ~ 4. (생략) <u><신설></u>	1. ~ 4. (제정안과 같음) <u>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7)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 안 제13조)

- 제정안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3조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행정서비스의 효율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됨. 또한 세계유산의 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타지방 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는 보존지역의 범위로 인해 세계유산 인근 두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업무협약체결이나 협력관계 구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8) 홍보·교육(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세계유산에 대해 홍보하고 지역주민 대상 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9조에서 이미 세계유산 등을 활용한 교육·홍보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제정안	수정의견
<p><u>제14조(홍보·교육) ① 시장은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은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의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세계유산 보존·관리와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고, 국내외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내 관련 단체와의 교류활동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u></p>	<p><삭 제></p>

마. 종합 의견

- 우리나라 세계유산은 1995년 처음 등재된 이후 2022년 현재 15건으로 지금까지는 세계유산의 등재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음.
- 2017년부터 도시화 및 개발 행위에 의한 보존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내 우수한 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현행 법령상으로도 사업 추진은 가능하지만, 입법·제도상 체계적인 뒷받침을 통해 향후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제정안으로 인해 시민들의 서울의 세계유산의 가치 인식과 정부와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 관리·활용에 한층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서울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계유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서울시 소관 사무의 조례제정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서울 소재 세계유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므로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도록 실제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외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국가에서 관리하는 세계유산은 제외함(안 제5조).
-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운영에 시장 재량권 부여 조항 신설함(안 제11조).

- 중복된 조문을 삭제함(안 제14조).

V.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7
----------	--------

제안년월일 : 2022년 12월 20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수정이유

- 서울 소재 세계유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므로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도록 실제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외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세계유산은 제외함(안 제5조).
- 다.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운영에 시장 재량권 부여 조항 신설함(안 제11조).
- 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함(안 제14조).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조제목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한다.

안 제5조 중 “유산에”를 “유산(이하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에”로 한다.

안 제5조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세계유산은 제외한다.

안 제9조제1항제1호 중 “세계유산, 잠정목록 유산(이하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을 “세계유산 등”으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안 제1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 제14조는 삭제하고 안 제15조를 안 제14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책무) ① ~ ③ (생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세계유산 및 잠정 목록 <u>유산</u> 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서 신설>	제5조(적용 범위) ----- ----- <u>유산</u> (이하 “세계유산 등” 이라 한다)에 ----- .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세계유산은 제외한다.
제9조(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 등) ① (생략) 1. <u>세계유산, 잠정목록 유산</u> (이하 “세계유산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조사	제9조(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 등) ① (제정안과 같음) 1. <u>세계유산 등</u> ----- ----- -----
제11조(서울특별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1. ~ 5. (생략) <신설> ② (생략) 1. ~ 4. (생략) <신설>	제11조(서울특별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제정안과 같음) 1. ~ 5. (제정안과 같음) 6. <u>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u> ② (제정안과 같음) 1. ~ 4. (제정안과 같음) 5.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제 정 안	수 정 안
<p><u>제14조(홍보·교육) ① 시장은 세계 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u></p> <p><u>② 시장은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의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세계유산 보존·관리와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고, 국내외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내 관련 단체와의 교류활동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u></p>	<p><u><삭 제></u></p>
<p><u>제15조 (생 략)</u></p>	<p><u>제14조 (제정안 제15조와 같음)</u></p>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서울특별시 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세계유산이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지닌 자산이므로 이를 보존·관리하고 그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래세대에 양호한 상태로 인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3. “세계유산지구”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내 우수한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이하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세계유산은 제외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세계유산등재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업의 시행
3.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활성화 방안
5. 세계유산지구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6. 교육 및 홍보 활성화 방안
7.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 증진 방안
8. 재원의 조달
9. 그 밖에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제9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계유산 등에 대한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조사
2. 세계유산 등에 대한 구술사(口述史)·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활용
3. 세계유산 등을 활용한 교육·홍보 및 시민의 인식개선
4.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대상 문화유산 발굴 및 조사
5. 세계유산지구에서의 환경정화 등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주민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세계유산 등의 멸실·훼손 구간 복원 노력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의 멸실·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발굴·복원 등을 통해 그 원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관리청 또는 총괄청이 국유에 속하는 세계유산 등의 멸실·훼손 구간 복원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멸실·훼손된 세계유산 등의 주변 지역 경관 등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광역도시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세계유산보존협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서울특별시 세계유산보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재검토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따른 세계유산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5.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원·건설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지역주민 대표
3. 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문화재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위탁)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관리와 홍보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